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75
----------	-------

발의연월일 : 2022. 4. 8.

발 의 자 : 구자근 · 이명수 · 김태흠
김석기 · 김선교 · 권명호
김희곤 · 김용판 · 김예지
정우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사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특히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결과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9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제9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제108조제12항제2호 중 “제8조의8제10항에”를 “제8조의8제11항에”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2호 중 “제8조의8제11항에서”를 “제8조의8제12항에서”로 한다.

제261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의8제10항에”를 “제8조의8제1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제6호 중 “제8조의8제11항에서”를 각각 “제8조의8제12항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 ⑧ (생략) <u><신설></u>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u> <u>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u> <u>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u> <u>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이 법</u> <u>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u> <u>로 본다.</u>
<u>⑨ ~ ⑭</u> (생략)	<u>⑩ ~ ⑮</u> (현행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⑪ (생략)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8조의8제10항에</u> 따라 고발 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 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 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 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생 략) ⑬ · ⑭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 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1. ~ 11. (생 략) 12. 제272조의2제3항(<u>제8조의8</u> <u>제11항에서</u>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出入 을 방해하거나 資料提出要求 에 응하지 아니한 者 또는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2. <u>제8조의8제11항에</u>----- ----- ----- ----- 3. (현행과 같음) ⑬ · ⑭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제8조의8</u> <u>제12항에서</u>----- ----- -----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u>제8조의8제10항에</u> 따른 시정 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③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형사소송법」 제211조(헌행범인과 준헌행범인)에 규정된 헌행범인 또는 준헌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u>제8조의8제11항에서</u>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4. (생략)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272조의2제4항(<u>제8조의8제</u>	1. <u>제8조의8제11항에</u> ----- ----- ----- ----- 2. ~ 4. (헌행과 같음) ③ ~ ⑤ (헌행과 같음) ⑥ ----- ----- -----. 1. (헌행과 같음) 2. ----- ----- ----- -----제 8조의8제12항에서----- ----- ----- 3.·4. (헌행과 같음) ⑦ (헌행과 같음) ⑧ ----- ----- -----. 1. ~ 5. (헌행과 같음) 6. -----제8조의8제
---	---

<u>11항에서</u>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 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⑨ ~ ⑫ (생략)	<u>12항에서</u> ----- ----- ----- ----- ⑨ ~ ⑫ (현행과 같음)
--	---